#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 의 안 번 호 | 1124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안이유

○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음.(안 제3조)

○ 관내에 거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 외국인 뿐 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5조)

○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어·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

○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1일(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이 포함된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식,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외

국인 관련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17조)

**3. 근거법령 : 붙임**

**4. 의안전문**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붙임 1. 근거법령(발췌분) 1부.
2. 입법 예고문 사본 1부.
3. 관련공문(충청북도 자치행정과-13574(2006.11.30)) 1부.
4.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1부.

#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또는 종사하고자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 외국인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시장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그 가족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전 센터등의 외국인지원 업무 부서 책임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제천시 외국인지원 센터 설치)**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가칭 "제천시 외국인지원 센터"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인지원센터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시장은 제천시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중에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외국인 포상에 관한 사항은「제천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 제천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 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 12. 20. 법률 제8069호 】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입법 예고**

**제천시 공고 제2006 - 1818호**

#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제 천 시 장**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 관내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음.(안 제3조)

○ 관내에 거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4조)

○ 외국인 뿐 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5조)

○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어·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

○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1일(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이 포함된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식,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외국인 관련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17조)

### 3. 의견 제출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천시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전화 : 640-5132, FAX : 640-51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12-2, 제천시 자치행정과(우편번호 390-701)

○ 담당자 : 서병열( E-mail : sby5025@hanmail.net)

**관 련 공 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 충 청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00시(군)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추진

1.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6505(2006.10.31)호의 이첩 입니다.

2. 도내 거주외국인의 생활편익 향상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00시(군)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송부하니

3. 시군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007년초 조례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00시(군)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 1부. 끝.

##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더01-12(자치행정관련부서장)

★지방행정주사 임달섭 지방행정사무관 박재익 자치행정과장 전결 11/30 박재익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574 ( 2006.11.30. ) 접수 자치행정과-14405 ( 2006.12.01.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513 /전송 043) 220-2519 / rim2278@cb21.net / 공개

# 00시(군)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0시(군)(이하 "시(군)"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00시(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00시(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00시(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00시장(군수)는(이하 "00시(군)"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00시(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00시장(군수)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00시장(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

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00시(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00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00시장(군수)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00시장(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00시(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단체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외국인지원업무 부서 책임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00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00시장(군수)를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00시장(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00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00시장(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

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00시(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00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00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00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00시장(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지역 센터설치) ①00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거주외국인지원을 위한 가칭 "00 시(군)외국인지원 센터"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별 1개소 이내로 한다

②외국인지원센터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00시장(군수)는 00시(군)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의 날) ①00시장(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중에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00시(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00시장(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포상) ①00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외국인 포상에 관한 사항은 「00시(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00시(군)민) ①00시장(군수)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00시(군)민으로 예우 할 수 있다.

②명예00시(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00시(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00시(군)명예시(군)민증서 수여조례」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근거 마련

## 행자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시달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10.31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연말까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 셋째, 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넷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행자부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반영하고,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도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 붙임 1.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 ○○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